

soundings

In this issue: Message from the Managers | Demurrage | Damages and unsafe ports

Club manager, Mr. Daniel Evans
의 인사말



이 새로운 형태의 UKDC Sounding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의 회원사들에게 최근의 법원판례, 중재재판판례 및 기타 법률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oundings은 본 협회와 관리회사가 취급하는 여러 일상 업무에 대한 정보도 더 자세히 제공할 것 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가 여러분의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또한 귀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여기 있는 사항 중에서 좀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지역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행분 soundings의 PDF file은 본 협회의 website, ukdefence.com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는 체선료에 관한 영국고등법원의 최근 판례 (English High Court decision)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표준용선계약서에 의하면 (standard charter wordings), 체선료 보상청구(demurrage claim)는 하역작업이 끝난 후 일정 제한된 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Waterfront Shipping vs Trafigua((2008)1LLR 286)건에서 체선료 청구는 청구시효 기간 내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이 보상 청구는 소송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하였다.

즉 펌프 사용일지 (Pumping logs)가 본 피해청구자료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그 logs는 용선계약서의 요구에 맞지 않게 terminal이나 본선선원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선주는 서명이 빠진 것은 이 건에서는 사소한 문제일 뿐 용선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선주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Pumping logs의 내용은 선사의 전체피해청구금의 단지 일부분만 증명하는 서류지만, 법원은 이 서명이 빠진 logs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선주사의 모든 피해 청구서를 무효화 시켰다.

체선료 피해청구 건은 대부분 London 중재로 결정되고 영국고등법원 (English High Court)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부터는 London arbitrator들도 이 엄격한 판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각의 보상청구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체선약관(demurrage clauses)내의 서류규정 (documentary provisions)을 본선 선원 및 육상 직원이 엄격히 준수 해야 하는 것이다. 선주나 정기 용선자라는 위치와 상관없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유효한 배상청구 건도 기술적으로 실효하게 될 수 있게 된다.



작년 해운계는 “Golden Victory” 와 “Achilleas” 건으로 손해배상법에 관한 주목할만한 2건의 판례를 남겼다.

“GOLDEN VICTORY”호 건의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4년 먼저 본선을 선주에게 반선하였다. 하지만 용선자는 본 용선계약을 위반한지 약 1년6개월 이후 2003년 미국이 Iraq를 침공하여 이 침공 때문에 당시 이 용선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선주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불을 일부분으로 한정시킬 수 있었다.

“ACHILLEAS”([2007] 2 LLR 555)건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최대용선기간 내에 본선을 반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선주의 손해 즉 그 다음용선계약 (a subsequent fixture) 취소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 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례는, 본선 Delivery가 늦어진 기간 동안의 피해액만 선주가 보상 받는 것이 관례였다.

상기 2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정통적인 법적인 해석보다 상업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세계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GOLDEN VICTORY” ([2007]2LLR 164) 건의 경우 이전의 일반적인 관례는 용선자의 피해보상책임은 본선이 반선 되는 시점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즉 반선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용선계약위반 시 이미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항이 아니었다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상원(House of Lords)의 결정에 의하면, Gulf 전쟁 이후 기간까지 선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선주는 실제 용선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보다 용선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더 유리한 입장이 되므로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원칙”에 위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5명의 법관의원(Low Lords) 중 2명은 이 결정에 반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이 결정은 영국상법의 전통적인 힘이고 또한 중요한 수요의 우위를 차지 하고 있는

확실성의 특성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ACHILLEAS건 또한 용선시장에 많은 걱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연된 반선이 용선자가 제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용선자는 이 “아킬레스” 결정에 의하여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용선자가 늦게 반선을 할 경우 그 위험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용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초안약관(drafting clauses)을 추가 함으로서 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영국상원(House of Lords)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어있다.

Club의 관점에서는 이 두 결정 모두 소송의 범위와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GOLDEN VICTORY건의 예를 들면, 장기용선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사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할 수 있는 외부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가능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ACHILLEAS건의 결과도 손해배상 청구인들이 다른 추가적 손해 배상 청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도록 부추길지 모른다. 예를 들면 speed claim으로 인한 재용선료의 감액 등 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법원은 이제 선례보다는 실용적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AIC Ltd와 Marine Pilot Ltd 간의 “The Archimidis”호건 [2008] EWCA Civ 175 “안정항[항구이름]”이라고 명명되면 안전항 담보인가?



최근에 상고법원(The court of Appeal)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을 명확히 하게 한 판결을 내렸다. 즉 위의 구절이 안전항 담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본선 “ARCHIMIDIS”는 안전항이라고 명시된 Ventspils에서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3항차 연속 항해 용선되었다. 중재심판에서 용선자는 이는 단지 항구가 안전하다는 당사자간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항구가 안전하다는 용선자의 담보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용선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용선자에 의한 항구의 안정성 담보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High court)은 이 중재 판결을 가결하였고 다시 상고법원(The court of Appeal)에서도 가결되었다. 즉 상고법원(The court of Appeal)은 “load one safe port Ventspils”는 이 문장만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discharge one/two safe ports”란 문장은 하역항(혹은 하역항들)이 안전하거나 안전할 것이라는 용선자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load one safe port Ventspils”도 a safe port warranty by Charterers (이 항구가 안전하다는 Charterers의 담보)를 함축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여기에서 안전(safe)이라는 말에 대하여 Ventspils 항이 안전한 항이라고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구태여 Ventspils 항을 안전한 항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의하여 문맥상으로 a safe port warranty로 유추 해석되는 것도 명백한 담보 (a warranty) 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